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60000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07-2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10-20

www.sindduk.com

sindduk1@sindduk.com

신 떡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신화F&B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신화에프앤비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26길 11, 102동 1902호
(칠성동2가, 대구역유림노르웨이숲)

■ 대표 전화번호 : 053-957-0017

■ 대표 팩스번호 : 053-957-0019

■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개설총괄팀, 053-957-001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4
II. 가맹본부의 [신떡]가맹사업현황	8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2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3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0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36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7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0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41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 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신화 에프앤비	신 떡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26길 11,102동 1902호 (칠성동2가, 대구역 유림노르웨이숲)			
	법인설립 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05.1.12	2005.1.12	이민화	053-957 -0017	053-957 -0019
	법인 등록번호	110111-3149493	사업자 등록번호	105-86-74776	

* 당사의 브랜드는 회사설립일 보다 앞선 1999년 10월 1일 입니다.

2. 특수 관계인의 일반정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상호/이름	브랜드	주 소		
명 칭	이민화	신 떡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26길 11,102동 1902호 (칠성동2가, 대구역 유림노르웨이숲)		
사용인 (임원)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2005.1 ~ 현재		이민화	053-957-0017	053-957-0019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 · 합병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신떡]이라 함)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신떡	세상에서 가장 매운 떡볶이 (辛 떡)
상 호	신떡 OO점	
상표(서비스표)	신떡	상표 등록번호 : 40-0625526-0000
	신떡	상표 등록번호 : 40-0634091-0000
		상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45-0026629-0000
광 고		고추를 형상화한 '신떡' 이미지 떡볶이를 형상화한 '신떡' 이미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20,947	32,300	88,647	3,666	-5,761	-2,380
2022년	132,801	33,396	99,405	8,680	-2,541	10,757
2023년	124,992	25,510	99,482	4,625	-3,764	77

그 근거자료는 『첨부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민화	대표이사	2005.1~2006.9	(주)민재푸드 대표이사	총괄업무
			2006.9~현재	(주)신화에프앤비 대표이사	총괄업무
			2007.9~2008.12	시간강사	디지털 경영학

7. 바로 전 사업연도 임직원의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당해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적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신청일자 등록(출원)번호	소유자	소유자	등록 만료일
신떡(상표)	사용권	2004.06.16 출원 2005.07.20 등록	출원 제4020040027344 등록 제4006255260000	이민화	2025.07.20
신떡(상표)	사용권	2005.04.22 출원 2005.10.07 등록	출원 제4020050017833 등록 제4006340910000	이민화	2025.10.07
 (서비스표)	사용권	2006.09.15 출원 2009.02.27 등록	출원 제4520060003416 등록 제4500266290000	주식회사 신화에프앤비	2029.02.27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II. 가맹본부의 [신떡]가맹사업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의 사업개시일

- 2001년 10월 16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1999년 10월 1일)

2. [신떡]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이름	가맹사업경영기간	사무소 소재지
신떡	신떡	이민화	2001.10.16 ~2005.1.11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3-8
(주)민재푸드	신떡	이민화 이재명	2005.1.12 ~ 2005.7.20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7-46
(주)민재푸드	신떡	이민화	2005.7.20 ~ 2006.9.15	대구 중구 문화동 11-1 밀리오레빌딩 1305호
(주)신화에프앤비	신떡	이민화	2006.9.15 ~ 2019.04.30	대구시 동구 신암남로 24길 51 (신암동)
(주)신화에프앤비	신떡	이민화	2019.04.30. ~ 현재	대구시 북구 칠성남로26길 11, 102동 1902호(칠성동2가, 대구역유림노르웨이숲)

3. [신떡] 업종

영업표지	업종	
신떡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분식	떡볶이 및 튀김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신택]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6	26	0	26	26	0	22	22	0
서울	0	0	0	2	2	0	1	1	0
부산	3	3	0	3	3	0	3	3	0
대구	5	5	0	5	5	0	5	5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1	1	0	1	1	0	1	1	0
울산	0	0	0	0	0	0	0	0	0
경기	2	2	0	3	3	0	2	2	0
강원	3	3	0	2	2	0	2	2	0
충북	1	1	0	1	1	0	1	1	0
충남	1	1	0	1	1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7	7	0	6	6	0	5	5	0
경남	3	3	0	2	2	0	2	2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

(단위 : 개)

분류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28	1	3	0	0	26
2022년	26	3	3	0	2	26
2023년	26	0	4	0	0	22
합계	-	4	10	0	2	-

[신택]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첨부2』를 확인하십시오.

6. '신타' 외가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신타' 외가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신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2	132,103	11,278	362,437	24,162	3,000	3,236	20개소적용
서울	1	해당 없음		-		-		5곳 미만
부산	3	해당 없음		-		-		5곳 미만
대구	5	131,186	10,727	191,792	15,325	67,112	4,474	5곳 산정
인천	0	해당 없음		-		-		5곳 미만
광주	0	해당 없음		-		-		5곳 미만
대전	1	해당 없음		-		-		5곳 미만
울산	0	해당 없음		-		-		5곳 미만
경기	2	해당 없음		-		-		5곳 미만
강원	2	해당 없음		-		-		5곳 미만
충북	1	해당 없음		-		-		5곳 미만
충남	0	해당 없음		-		-		5곳 미만
전북	0	해당 없음		-		-		5곳 미만
전남	0	해당 없음		-		-		5곳 미만
경북	5	해당 없음		-		-		5곳 미만
경남	2	해당 없음		-		-		5곳 미만
제주	0	해당 없음		-		-		5곳 미만

* 위 표에 나타난 전체 매출 산출근거 중 미 산입된 매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22개소 중 20개소 적용)

- 2023년 말~2024년 초 신규오픈, 양도양수, 휴점, 폐점 등에 따른 자료 미수령으로 매출 표기 제외 (2개소) : 문현점, 형곡점

*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당사가 각 가맹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토대로 매출액을 파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신택]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신택]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22	약 3383.3일

9. 가맹지역본부 (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 경기도	서울/경기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15, 447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④	
	이재명	010-8946-1607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⑤	가맹금 수령권한 ^⑥
	2021.11.16. ~ 2026.11.15.	○	○	×

서울/경기지사는 서울/경기지사에서 가맹점모집 및 신규가맹계약 한 매장에 한하여 매장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당사는 상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으며, 매장관리는 전국 매장을 본사의 담당직원이 직접 관리합니다.

10. 광고 · 판촉 지불내역

당사에서 2023년 '신택' 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0]천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35]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 천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	-	-	-	-
광고	-	-	-	-	-	-

판촉	-	-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가맹금의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신화에프앤비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과 최초예치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며, 당사의 여신한도는 일금 육천만원 (₩60,000,000) 입니다.	
보험금액	7,000,000원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손괴, 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 또는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손괴, 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신떡'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대상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원, 부가세포함)

항 목	내 역	금 액	비 고
가맹비	브랜드사용, 로열티, 매뉴얼제공	4,400,000	
교육비	매뉴얼지도, 조리실습, 점포운영	2,200,000	
계약이행보증금	물류보증, 손해배상보증-계약해지 시 환불	1,000,000	VAT 없음
합 계		7,600,000	

2) 계약이행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맹계약서 제14조4항)

(단위 : 원)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원	제3자 물류 미수금 정산 후 1개월 내	제3자 물류 미수금 미 정산 시	

3) 예치가맹금의 범위 및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부가세포함)

항 목	내 역	금 액	비 고
가맹비	브랜드사용, 로열티, 매뉴얼제공	4,400,000	
교육비	매뉴얼지도, 조리실습, 점포운영	2,200,000	
계약이행보증금	물류보증, 손해배상보증-계약해지 시 환불	1,000,000	VAT 없음
합 계		7,60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신떡' 매장 운영을 위해 구비하여야 할 품목 및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으로 당사에 의뢰하거나, 귀하가 직접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 3-1, 3-2, 3-5』를 확인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10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주방 및 홀 집기류	(협력업체)	9,350	935	설치 1일 전	발주 전 계약취소	권유사항 별도진행가능

포장기기 및 홍보 판촉물	가맹본부	4,290	429	오픈 1일 전	상품 미공급 시	권유사항 별도진행가능
간판 및 POP	(협력업체)	3,850	385	설치 1일 전	발주 전 계약취소	권유사항 별도진행가능
가 구	(협력업체)	1,100 (매장별로 상이 함.)	110	오픈 2일 전	발주 전 계약취소	권유사항 별도진행가능
인테리어	(협력업체)	14,300	1,43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공사 전 계약취소	권유사항 별도진행가능
합 계		31,790				

*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현장도면(전기, 설비, 덕트) 작성/협의 비용으로 [1,000,000]원(부가세별도)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경우 10평 초과 시에는 평당 [1,300,000]원(부가세 별도)이 추가됩니다.

* 매장의 형태와 가맹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주방기기, 포장기기, 간판, 어닝, 돌출간판, 철거, 가스공사, 전기증설, 냉난방기, 정수기, 제빙기, POS, 화장실, 소방, 닥트, 외부공사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된 항목으로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실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 위 표의 금액에 대한 지불은 합계 금액의 50%를 공사시작 전 지불하며, 잔금 50%는 공사완료일 및 각 집기의 입고완료 / 확인 후 지불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주체 : 가맹점사업자

- 선정기준 : 가맹본부의 가맹점 운영을 통한 경험으로 최소 세대수 2,000세대 이상, 대로 및 주 통로(소방도로)를 권장하나, 가맹희망자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신덕’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내역은 『첨부3』을 참조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을 포함한 기타 비용에 대해 가맹점 희망자가 분담하는 등의 별도 사항을 두지 않습니다.

단, 가맹계약서 제40조에 따라 지연이자를 연12%를 가산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40조 (지연이자)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0] 쪽에 나와 있으며 ‘점포환경개선비용 부담기준’은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31]쪽 분담비율과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원, 부가세포함)

구 분	지급대상자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상표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0	-	-
보수(재)교육	가맹본부	1,100,000 / 1회	-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교육이며, 책정된 금액 은 담당직원의 현지 체재비 용이다.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간판, 내부DP 교체업체(미정)	실비정산	-	각 가맹점별 지역, 간판위치, 사이즈에 따라 실 견적서를 접수 후 제작, 시공하므로 반환대상이 될 수 없다.
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실비정산	-	각 가맹점의 의결을 거쳐 진 행하는 것으로 독단적인 거 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포환경개선 부담비용	가맹점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31쪽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지연금의 연12%	-	가맹계약서 40조 "본 계약" 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 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 는 날까지 연 이율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산정이 불가능한 가맹점(양도양수, 휴점 등)은 별도의 차액가맹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필수품목(권장) 등 모든 품목을 제3자 업체에 위탁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모든 품목에 대하여 권유로 진행하기에 가맹사업자의 노력에 따라 차액가맹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재고관리, 회계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가맹계약서 제6조 2항에 정의된 가맹계약 갱신은 초기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가맹비의 50%를 지불하고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조건이나 권리의 변화 없이 승계, 유지되며, 이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조건에 따라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종료시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도 가맹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원, 부가세포함)**

항 목	내 용	금 액	비 고
양도양수비	브랜드사용, 로열티, 매뉴얼제공	3,300,000	
	매뉴얼지도, 조리실습, 점포실습		
계약이행보증금	물류보증, 손해배상보증 - 계약해지 시 환불	1,000,000	VAT 없음
합 계		4,300,000	

상기 내역의 비용부담은 가맹점운영권 양수자가 부담하며, 양도 · 양수의 조건은 양도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가맹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양수자가 신규가맹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규 가맹계약 조건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4) 계약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서 제35조 1항에 따라 즉시 가맹본부의 노하우 사용 및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표지가 부착된 모든 내, 외장 시설물을 철거,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계약서 제35조 6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종료 후에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활용하거나 노하우를 이용하여 영업을 지속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일 『100,000』원에 대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은 상품 중에서 완전물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는 출고가격으로 상환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신떡'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는 특수 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신떡]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신떡]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귀하는 1), 2)의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가맹점 개설 지역의 물류업체, 유통회사,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여 “V. 1.의 물품구입 및 입차현황” 품목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격 결정

가맹점 사업자는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한 또는 보호를 받습니다.

1)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당사의 상표권과 기타 명성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지정된 상품 외 상품구매,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신떡’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함입니다.

상품 · 용역명	상품 제작사	위반 시 책임
----------	--------	---------

분말소스 7종	참마시푸드	귀하는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사품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가맹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떡볶이 떡	우리원까치식품	
오뎅 (중보, 상보) 잡채말이	(주)미보부산어묵	
튀만두	한양식품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 제21조, 제23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 ·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유사경쟁업체	신천할매떡볶이 본사 및 가맹점	본사 품목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품목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신전떡볶이 본사 및 가맹점		
	아딸 본사 및 가맹점		
	신불떡볶이 본사 및 가맹점		
	신참떡볶이 본사 및 가맹점		
	신참떡볶이 본사 및 가맹점		
	엽기떡볶이 본사 및 가맹점		
	쥬스떡볶이 본사 및 가맹점		
다른 가맹점사업자	'신떡' 가맹점사업자		
불특정인	신분이 불분명한 일반인	소스분말 7종	미 조리된 소스분말을 고객 및 일반인에게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 제22조 5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판매가격의 결정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조인 내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표준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권장(조인)가이며, 가맹점이 판매촉진 등의 필요로 [표준가격]과 다르게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빠짐없이 가맹본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 후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항 목	메뉴	판매단가(원)	
		서울, 경기	기타 지방
신떡 메뉴	신떡, 매떡, 짜떡, 카떡	4,000	4,000
	국물떡볶이, 국물떡오뎅	14,000	14,000
	순대쟁반떡볶이	13,000	13,000
	얼큰오뎅탕	4,500	4,500
튀김류	튀오뎅, 튀만두, 튀말이, 튀순대, 김말이, 매콤김말이	1,500	1,500
	단호박튀김, 깡구마, 고추튀김, 크림치즈볼, 고구마튀김, 매콤오징어바, 게맛살 튀김, 한입고추튀김, 치즈봉, 잡채고로케	2,000	2,000
식사류	새우/햄야채 볶음밥, 돈까스	5,500	5,500
	치즈돈까스	6,500	6,500
김밥류	고추, 꼬마김밥,	3,500	3,500
	치킨마요 / 스팸마요 / 참치마요 덮밥	4,000	4,000
면류	냄비라면/냄비우동	4,000	4,000
	눈물라면/눈물우동	4,500	4,500
	볶음우동	5,500	5,500

음료/빙수	쿨피스, 웰치스	1,500	1,500
	콜라, 사이다(500ml)	1,500	1,500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제도 유무와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제도 운영 여부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여부
○	○

당사 및 계열회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신떡]을 추가 설치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떡볶이를 전문으로 하는 동일업종의 영업표지를 가진 가맹사업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지역의 개발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귀하의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귀하의 영업노력이 손상이 없도록 협의합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변경가능 여부	변경사유
해당점포를 포함하여 직선거리로 500m이상	가맹계약서 별첨1. 구역(지도)으로 표시	가 능	해당 가맹점주가 조정을 희망할 경우 또는 인접 가맹점과 협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경우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해 앞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조정사유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른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신떡]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신떡]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최초 가맹계약 기간 : (3) 년
 -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계약기간 : (3) 년
 - 양도, 상속 시 계약기간 : 기존 가맹점의 잔여계약기간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 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계약서 제6조 3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가맹점 운영 중 가맹점 영업권을 포기한 경우 자동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됩니다.
-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및 그 절차

이하 (“갑” 가맹본부, “을”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서 제34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 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① "을"이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을"이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가맹계약서 제34조 1항)

2.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제34조 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4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4조 2항

가맹계약서 제25조 (상품공급의 중단)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3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②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③ "을"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④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⑤ "을"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⑥ "을"이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⑦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⑧ "을"또는 "을"의 직원이 제11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

⑨ "을"의 채무액이 제14조의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⑩ "을"이 제16조 제 1항 내지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⑪ "을"이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⑫ "을"이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⑬ "을"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⑭ "을"이 제2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⑮ "을"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⑯ "을"이 상품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⑰ "을"이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⑱ "을"이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 하거나 제2항에 의한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⑲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⑳ "을"이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㉑ "을"이 제29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㉒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㉓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㉔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35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을"은 즉시 노하우 사용 및 영업을 중단하고,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갑"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갑"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은 공급받은 상품 중에서 완전물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출고가격으로 상환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가맹점 운영기간동안 "갑"의 영업표지로 홍보된 배달주문 전화번호에 대해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명의이전 한다.
5. "을"은 계약의 종료 후 또는 해지 후 3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동종업종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영위하는 영업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6.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상기1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는 위약금으로 종료 또는 해지일 이후 1일당 일금 일십만원정(₩ 100,000)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연장(재계약, 갱신)시 관계법령이나 시장상황 변화로 인해 변경된 가맹계약서 조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

1)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매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가맹계약서 제37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서면을 통한 사전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영업권 양도, 승계의 경우 효력이 없으며,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 또는 승계한 자에 대한 계약기간은 가맹점사업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가맹본부의 양도·양수비에 해당하는 일금 삼백만원(부가세별도) 및 물류보증금 일백만원을 지불한다. 단,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는 신규가맹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진행한다.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가맹계약서 제38조)

가맹점사업자가 사망 시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단,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영업을 승계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문서로 통지한다.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한다.

4) 가맹점 운영권의 대리 (가맹계약서 제31조 3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리 경영시킬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후, 대리경영인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가맹계약서 17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및 종료 또는 해지 후 2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 브랜드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동종업종의 범위 : 가맹본부와 유사한 영업방식, 메뉴 등을 사용하는 업종 및 경쟁브랜드 (떡볶이전문점)**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에 대한 제한 (가맹계약서 제 2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영업일수는 원칙적으로 주6일 이상, 월25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다. 단,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휴업하기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맹계약서 제18조, 제19조)

당사는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경영지도(운영매뉴얼, 복장, 영업시간, 시설집기 유지관리, 위생, 세무 등)를 가맹본부의 경영지도위원(SUPERVISOR)을 통해 실시한다.

9. 광고 및 판촉활동 (가맹계약서 제32조, 33조)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신떡' 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부담 외 전액	가맹사업자별 동일부담	행사진행 의견수렴 → 총비용산출 → 가맹점부담액제시 → 가맹점참여결정	대중매체 광고 등 (전국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판촉행사

2) 가맹점 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제17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5조 제5항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금으로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1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원, VAT포함)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인터넷 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즉시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 담당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즉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의사결정, 시장조사 -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문의 후 7일 이내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		
가맹계약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D-21	
교육실시 (본사이론교육)	- 본사교육장 운영매뉴얼 교육	D-21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 가맹금 입금	D-20	7,600,000원 (가맹비, 교육비,물류보증금)
점포 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0 (19일)	
현장 공사착수	- 인테리어 공사실시	D-19 (18일)	14,300,000원(인테리어) 3,850,000원(간판/DP)
집기입고	- 주방기기, 의/탁자 - 포장기기/본사초도물품	D-1 (1일)	9,350,000원(주방기물) 4,290,000원(포장기기, 판촉물)

가맹점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D-day	
교육실시 (매장현장교육)	- 서비스 교육 - 직원, 자재, 집기 관리교육 - 위생, 안전교육 - 조리교육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 중 가맹금 및 포장기기 판촉물을 제외한 주방기물 및 인테리어 간판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설치, 시공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1)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

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맹점 영업개시 후 6년 이후 또는 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시에는 점포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	------	------	------	----

개점 행사품	가맹점 오픈 시 전단지(1면 약8,000장), 자석 씨링지(약5,000장)	가맹점 오픈 시	오픈 시 1회	해당 없음	
판촉장려금	해당 없음				
판촉지원	해당 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 없음				
반품지원	해당 없음				
마일리지	해당 없음				
CRM	해당 없음				
테스터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계약이행, 표준화(맛과 서비스), 시장조사, 고객관리, 위생관리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일정조율 →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업무지원팀 (053-957-0017)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계약이행, 표준화(맛과 서비스), 시장조사, 고객관리, 위생관리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일정조율 →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가맹점 부담 (실비청산)	문의: 업무지원팀 (053-957-0017)

		이를 설명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제공을 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신용제공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Ⅷ.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신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교육 (개점 전 교육)	- 프랜차이즈 개념 - 신덱소개 - 주문시스템 - 인테리어 / 시설집기관리 - 세무 / 보험	집단강의 (본사강의실)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교육
	- 메뉴 조리법 - 고객 서비스 - 매장운영관리 - 직원관리 - 자재관리 - 집기관리 - 위생 / 안전관리	실습교육 (오픈가맹점, 기 영업가맹점)	매장오픈 전, 후 4일	필수교육
수시교육	- 신메뉴 교육	실습교육 (본사교육장)	필요 시	
특별교육	- 매장운영전반	실습교육 (가맹점)	필요 시	
보수(재)교육	- 신규교육 항목	실습교육 (가맹점)	필요 시	
연말세미나	- 당해 연도 사업성과 /	집단강의	필요 시	

	문제점 파악 - 차기년 사업계획 / 가맹점주 의견수렴	(지역별 행사장)		
--	-------------------------------------	--------------	--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신떡'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 용(원)	비 고
신규교육 (개점 전 교육)	4일	2,000,000원	최초 가맹금 포함
수시교육	1일	실비정산	
특별교육	1일	실비정산	
보수(재)교육	1일	1,000,000원	교육인력의 체재비
연말세미나	1일	무료	매년 필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신규교육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서 제13조 2항에 따라 개점이 지연되며, 개점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배상합니다.

2) 보수(재)교육을 가맹점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서 제25조 1항에 및 제34조 1항에 따라 상품공급의 중단이나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개설총괄팀 (053-957-001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sindduk.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1. 최근 3개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1. 최근 3개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1. 최근 3개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2. 인접 가맹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3-1. 주방기물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3-2. 주방기물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3-3. 인테리어(간판/DP)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3-4. 인테리어(천정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3-4. 인테리어(평면도&전기설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3-4. 인테리어(입면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3-4. 인테리어(입면도-카운터부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3-5. 홀 가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4. 원부재료 공급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 (가맹희망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 (본사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